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1. 목적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의 범위와 산정기준, 심사 및 확인 업무의 세부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심사·확인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침을 정하고자 함.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업무에 적용한다.

3.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

가.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공사의 경우** 아래기준을 적용한다.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는 적용 제외

① 건축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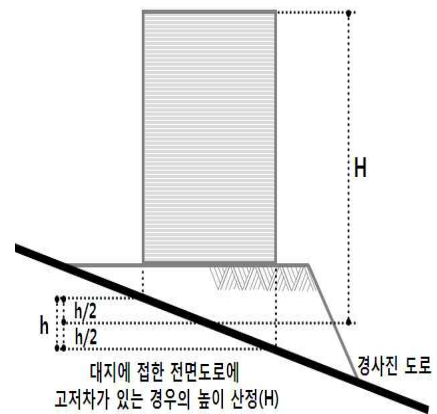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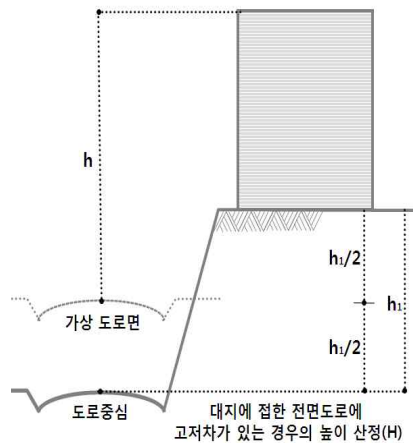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 면으로 본다.

- ㉔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1/2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중 나목 사항은 적용 제외

나.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사유] 공동주택(지상복합 빌딩)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는 상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높이만 산정되고 하부의 근린생활시설의 높이는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동 조항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정한 것으로 산안법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취지의 건축물 높이와 개념을 달리하므로 이를 제외함.



- ㉕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③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다수의 철탑 공작물 건립 시 트러스 등으로 철탑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질로 각각의 철탑이 서로 연결된 경우에는 단일 공작물로 보며, 다른 재질(로프 등)로 연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작물로 분류한다.

(2)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인공구조물(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의 높이는 설계도면 상의 지표면으로부터 인공구조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인공구조물과 접하는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1/2의 높이를 지표면으로 보고 높이를 산정한다.

(나) 인공구조물의 상단에 별도로 설치하는 피뢰침, 안테나, 광고탑 등의 시설물은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단일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단순히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로 분류하여 연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다만, 연결통로는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상 1층 또는 그 이상의 지상층에서 층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로 연결된 경우에는 단일건축물로 분류하여 각동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하층 구조물로 연결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로 분류하여 연면적을 각각 산정하되, 각동의 지하층 면적은 지상 1층 바닥 수평투영 면적을 산정하여 각 층별 지하층 면적을 각동 연면적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4)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 시설은 건축법상(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규정한 용도에 따르되, 2개 이상의 용도(복합 용도)로 된 경우에는 각 해당용도(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제출대상 공사로 본다. 단, 복합용도인 경우 공용의 지하층(지하주차장, 기계실 등)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되, 지하층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용도로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① 삭제<2007.12. >
- ②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③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④ 관람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①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②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에 당해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③ 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④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 및 안마원**
- ⑤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⑥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 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⑦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⑧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⑨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⑩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① 일반음식점·기원
- ②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③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④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⑤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⑦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 ⑧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⑨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장 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⑩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⑪ 의약품 판매소·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⑫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⑬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판매시설

- ①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②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별표1] 대규모점포의 종류

- 1. 대형마트 :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 중심으로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3호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④ 삭제<2007.12. >
- ⑤ 삭제<2007.12. >
- ⑥ 삭제<2007.12. >
- ⑦ 삭제<2007.12. >

(라) 운수시설

-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 ② 철도시설
- ③ 공항시설
- ④ 항만시설

(마) 종교시설

- ①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②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바) 의료시설

- ① 병원(종합병원)

(사) 숙박시설

- ①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일반 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제외

나.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의 경우 아래기준을 적용한다.

- (1) 대상공사가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 교량공사에 해당되어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교각 또는 교대 등이 높이 또는 굴착 깊이로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에 해당되더라도 심사수수료는 대상 교량공사만을 산정하고, 심사는 교량공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 (2)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미만인 교량공사는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교각, 교대 등이 높이 또는 굴착 깊이로 제출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높이 또는 굴착 깊이 부분에 대하여 심사수수료를 산정하고, 심사를 실시한다.

(가) 교량의 높이는 교량 하부구조물(교각, 교대 등)과 접하는 설계도면 상의 지표면으로부터 교량 상부구조물의 상단(포장면 등 마감면이 있는 경우 마감면 상단, 아치교·트러스교 등은 아치 리브·트러스 부재 등의 상단)까지의 최고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방음벽·방호벽·난간·장식물 등은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강, 바다 등에서의 교량공사는 교량 하부구조물과 접하는 설계도면 상의 하저 또는 해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를 산정한다. 다만, 설계도면 상에 교량공사를 위한 가교, 축도 등이 설계된 경우에는 설계도면 상의 가교, 축도 등의 상단으로부터 높이를 산정한다.

(나) 교량의 굴착 깊이는 설계도면 상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3”의 “다”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강, 바다 등에서의 교량공사는 하저 또는 해저 바닥면으로부터 굴착 깊이를 산정한다. 다만, 강, 바다 등에서의 교량공사는 설계도면 상에 축도 등이 설계된 경우 축도 등의 상단으로부터 “3”의 “다”의 기준에 따라 굴착 깊이를 산정한다.

(3) 상·하행선으로 이루어진 교량공사에서 구조해석을 동일하게 하고 상·하행선이 교각 및 상판 슬래브가 일체화되어 설계되고 시공이 이루어지는 교량공사는 동일교량으로 보아 대상교량 1개소로 본다. 다만, 구조해석을 분리해석하고 상·하행선이 교각 및 상판 슬래브가 분리되어 설계되고 시공이 이루어지는 교량공사는 개별교량으로 보아 대상교량 2개소로 하여 심사수수료를 산정하고, 심사를 실시한다.

다.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의 경우 아래기준을 적용한다.

(1) 흙막이 **지보공**의 종류 및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굴착 깊이를 산정한다.

(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각 위치에서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굴착 깊이를 산정한다.**

(나) 건설공사에서 집수정, 엘리베이터 핏트, 정화조 등을 위한 굴착으로 극히 작은 부분이 깊이 10m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전체 굴착면적의 1/8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본다.

(2) 도로공사·토석채취·부지 또는 단지조성공사의 절토사면은 높이가 10m 이상이라도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굴착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굴착면의 아래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는 작업일 경우,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이라도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예) 보링 기계 등으로 굴착하여 굴착한 수직갱 내에 근로자가 작업을 하기 위하여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공사

라. 터널공사의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터널공사는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 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 단면적이 2m² 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기존 철도하부에 지하보차도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개조공사의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1) 개조공사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 인공구조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적용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호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적용하고, 다음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건축물·인공구조물의 외부 마감 변경을 위하여 주요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내부 보호를 위한 보강타일 부착 및 외부도장작업 등 단순 변경인 때에는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부 또는 전부의 외부 마감재를 해체하고 재시공하는 때에는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본다.

바. 기타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실시한 현장에서 공사도중 별도의 건축물 등이 추가적으로 계약(별도 계약 공사가 아닌 추가계약 공사에 한함)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추가공사가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실시하고, 확인도 당초의 대상공사와 별도로 실시한다.

4.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의 착공 및 준공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점인 착공과 확인 종료시점인 준공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제출대상 공사별로 이를 분명히 하여 계획서의 지연 및 경과제출 또는 확인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한다.

구 분	착 공	준 공	비 고
건축물, 인공구조물 , 지하도상가 등	대상구조물 기초공사	대상시설물과 관련 시설물 전체 준공	
교 량	교량 기초공사	대상시설물과 관련 시설물 전체 준공	
터 널	수직구 굴착공사 또는 갱구부공사	대상시설물과 관련 시설물 전체 준공	수직구는 터널일부로 간주
댐	댐 기초공사	대상시설물과 관련 시설물 전체 준공	
굴 착	굴착공사	흙막이지보공의 해체 및 되메우기 완료	

주1) 기초공사라 함은 터파기, 기초면 고르기, 기초 파일향타를 포함한다. 단 건축물에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를 제외하고 기초면 고르기, 기초 파일향타를 기준으로 한다.

주2) 굴착공사라 함은 파일향타, 차수공사, 터파기를 포함한다.

가. 착공기준

착공은 계획서 제출 대상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지 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를 제외한 해당공사 시작을 기준으로 한다.

나. 준공기준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는 흙막이지보공의 해체 또는 지하구조물 종료를 준공기준으로 하고 이외 대상공사는 대상시설물 또는 관련 시설물 전체의 준공을 기준으로 한다.

5. 부도·공사포기 및 장기간 공사 중지 현장의 계획서 승계

가. 계획서 심사를 받고 공사 중 부도 또는 공사를 포기한 업체(이하 “부도업체”라 한다.)와 후속 업체 간의 계획서 승계에 관한 지침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구 분	조 치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가 아닌 건설업체의 부도 발생 경우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가 아닌 건설업체가 승계한 경우에는 기존의 부도업체에서 작성한 계획서의 승계를 인정하여 재심사 없이 공단에서 확인만 실시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가 승계한 경우에는 공단의 심사·확인 면제 (업체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함)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의 부도 발생 경우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가 승계한 경우에는 공단의 심사·확인 면제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가 아닌 건설업체가 승계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체 심사보고서를 인정하여 심사는 면제하고 공단에서 확인만 실시

나. 계획서 승계의 의미는 계획서 및 심사결과^의 인수인계를 말하며, 심사가 종료된 계획서 및 심사결과를 인수·인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공사에 대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획서 승계는 사본으로 대체 가능

다. 계획서 확인 대상공사 시공 중 사업주의 부도·공사포기 등으로 사업주가 존재하지 않거나 공사중지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는 등 확인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후 출장복명서를 첨부하여 종결할 수 있다. 다만, 확인 종결 전까지는 6월에 1회 이상 유선 또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을 확인대장에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대상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6. 계획서 심사번호 부여방법

가. 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심사업무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심사 및 확인대상의 관리를 위하여 계획서 심사업무규칙 별지 제2호, 제4호, 제5호 건설업 해당서식의 심사번호 및 공단 전산프로그램(이하 “ERP”라고 한다)에 입력하는 심사번호는 아래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제		○○○	-	○○○○	-	○	-	○○○	호
①	지역본부/지도원 명칭			②	해당연도		③	접수시 대상공사 일련번호	
				④	심사일련번호				

(1) 지역본부/지도원 명칭은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가) 심사**업무**규칙 별지 제2호, 제4호, 제5호 건설업 해당 서식의 지역본부/지도원 명칭은 팀 명칭과 관계없이 아래의 예를 참조하여 동일 기준으로 부여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센터는 센터의 명칭 뒤에 (건)을 표기

예) 서본건, 경인(대구·대전)본건, 경기남부건, 강원건, 경인본부(건), 경기남부성(건), 경남동(건)

(나) ERP상에 입력하는 지역본부/지도원의 명칭은 지역본부/지도원에 부여된 전산코드번호로 한다.

예) 11 : 서울지역본부, 81: 부산지역본부

(2) 해당연도 : 해당연도 네자리 모두 표기 (예 : 2007)

(3) 접수 시 대상공사(높이, 깊이, 교량, 터널, 댐) 일련번호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가) 수기관리 : 하나의 현장이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의 대상공사를 포함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동일한 심사일련번호를 부여하나 접수시 대상공사 일련번호는 대상공사별로 별도로 부여

-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가 아닌 **건설업체** : 접수 시 대상공사 일련번호 값은 0부터 1씩 증가하는 형태로 부여(대상공사가 1개일 경우 0 / 2개일 경우 0, 1)

예) 하나의 현장이 동일한 일자에 2개의 대상공사가 포함된 계획서를 접수하여 동일한 일자에 심사 수행 시

- 높이 31m이상 건축물 : 제 서본건-2007-0-001 호
-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 제 서본건-2007-1-001 호

-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 : 접수 시 대상공사 일련번호 값은 영어알파벳 (대문자) A부터 순서대로 부여(대상공사가 1개일 경우 A / 2개일 경우 A, B)

예) 하나의 현장이 동일한 일자에 2개의 대상공사가 포함된 자체심사 결과서 접수 시

- 높이 31m이상 건축물 : 제 서본건-2007-A-001 호
-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 제 서본건-2007-B-001 호

(나) 전산관리(ERP) : 수기관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접수 시 대상공사 일련번호 부여

(4) 심사일련번호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가) 접수순서로 부여하며 세자리로 표기

예) 001 → 일련번호 1을 의미

(나) 하나의 현장이 동일한 일자에 2개의 대상공사가 포함된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동일한 심사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 높이 31m이상 건축물 : 제 서본건-2007-0-001 호

-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 제 서본건-2007-1-001 호

(다) 하나의 현장이 대상공사별, 작업공종별로 심사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일련번호를 부여하나 전산관리(ERP)상의 관리번호는 동일하게 부여

(5) “3. 마”와 같이 하나의 현장에서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공사로 심사를 실시한 후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공사를 추가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동일한 대상공사(높이와 깊이)라 하더라도 접수 시 대상공사 일련번호도 별도로 부여한다.

예) - 기존 대상공사(높이 31m이상 건축물) : 제 서본건-2007-0-001 호

- 추가 대상공사(높이 31m이상 건축물) : 제 서본건-2007-1-115 호

나. 심사업무규칙 별지 제2호, 제4호, 제5호 건설업 해당서식에 기재하는 심사번호는 접수 시 대상공사 일련번호를 포함한 전체 심사번호를 표기한다.

예) 동일한 일자에 2개의 대상공사(높이 31m이상 건축물,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심사를 수행 시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

- 심사번호 : 제 서본건-2007-0/1-001 호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가. 공단의 심사·확인

(1) 계획서 작성 시 유자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의 이행여부는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계획서 검토자 및 검토자 주요 경력 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경우 인정한다.

(2) 사업장에서 공단을 방문하여 계획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별표1 기준에 의하여 관련서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민원인이 재차 공단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3) 사업장에서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는 별표2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건설현장 관계자를 불러 심사회의를 실시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사회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의일정을 통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에 의한 계획서 검토기간 15일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산정기준은 민원사무처리규칙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만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토요일은 처리기간에 포함) 다만, 심사업무규칙 제10조 제3항의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기간 10일은 초일을 산입하여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처리기간에 포함한다.
- (5) 계획서 심사 및 확인 범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계획서 제출대상과 제출대상이 아닌 공종이 혼재되어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획서 심사 및 확인 범위를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 이외 작업공종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 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6) 심사위원은 흠막이 지보공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아래 공종(작업)에 대하여 내설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흠막이지보공 붕괴위험 현장)
 - 구조검토 및 설치방법·순서, 계층계획, 굴착계획 등
 - 높이 6미터 이상의 거푸집 동바리 설치 건설공사(거푸집 동바리 붕괴위험 현장)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각 부재 이음방법, 조립·해체계획 등
 - 냉동창고, 주상복합,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 빌딩공사의 내부 설비 배관 작업(대형 화재위험 현장)
 - 작업장 부근에서 사용 중인 인화성 자재·물질명, 소화설비 등
- (7) 심사위원은 작업착수 전 안전성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 시 계획서에 첨부된 세부 공정표상에 (6)의 위험공종(작업)을 반드시 포함하여 확인공종(작업) [Hold Point]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별표3 형태의 인장을 제작하여 공정표상에 "Hold Point"를 날인(적색)하고, 심사운영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ERP상의 심사 및 확인 관리 프로그램에 확인자, 확인예정일, 위험작업 진행여부 확인일 등을 추가하여 종합관리

※ 심사위원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별 Hold Point를 정할 때 별표4 참조(별표4는 Hold Point 기준이 아니며, 단지 참조용이므로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Hold Point 지정)

(8) 계획서 심사 시 **대상** 공종의 상세 설계도 미확정 등으로 구조 등 안전성의 확인 없이 조건부 적정으로 판정하여 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상에 확인 시 제시 하도록 한 경우에는

- 사업장에서 서류를 제출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해당 기관의 심사위원이 검토하여 적정 또는 보완으로 구분하여 5일 이내에 사업장에 결과를 통보(팀장 전결)한다.(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2007. 4. 25 이후부터 계획서 심사 시 **대상** 공종의 상세설계도 미확정 등으로 구조 등 안전성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대상** 공종의 착공 전까지 미 제출된 **대상 공종**의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절차(계획서의 접수, 심사수수료 납부, 심사, 보완요청 등 현행 심사절차 준수)에 따라 심사 후 사업장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심사결과 통지서 상에 상기 이유로 확인 시 제시토록 하는 것은 불가함.

(9) 계획서 심사 또는 확인 시에 제출한 흠막이지보공, 거푸집동바리 등과 관련된 구조검토 계산서 및 설계 조립도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외는 철저히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 관련분야 전문기술사(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등)에 의하여 작성
· 검토되어 날인 된 경우
-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경우

※ 최초에 제출한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계산서 및 설계조립도서에 전문기술사의 날인이 없다고 하여 사업장에 관련분야 전문기술사의 검토·날인을 요구할 수는 없음.

(10) 계획서 심사위원의 업무능력 향상차원에서 계획서 심사업무규칙 제7조에 의거 신규로 심사위원에 위촉되는 건설직 직원은 위촉일로부터 10월 이내에 산업안전 **보건**교육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1) 계획서 확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현장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자 변경 및 전담자가 전담현장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팀장의 책임 하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른 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인수 또는 인계자가 팀장인 경우에도 확인자는 팀장 전결로 서명한다.

- (12) 계획서 확인결과 보고서에는 심사결과서의 조건부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조치완료, 미조치 사항, 향후조치사항(진행 중 포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계획 적정여부, 계획서 심사·확인 범위내의 추가적인 위험 요인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향후 진행공중에 대한 기술지원 내용은 계획서 및 심사결과서에 제시된 사항은 제외하고 중대 위험 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13) 계획서 확인 시 확인자는 심사위원이 지정한 확인공중(작업)[Hold Point]를 현장과 상호 확인(심사업무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ERP상의 심사 및 확인 관리 프로그램에 “확인예정일(HP)” 작성)하여 확인공중(작업)[Hold Point] 시기에 확인을 실시(확인 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반드시 확인 실시 - 법정 확인주기를 넘길 수 없음)하여야 한다.
- (14) 매월 확인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 작업 수행여부 및 위험공중 작업진행 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일정을 월 단위(예:○월중)로 확인 7일전까지 해당현장에 문서로 통보한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 확인 일정계획을 관할지역 국토해양부 지방 국토관리청(제주지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공동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나. 중대재해 발생 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 현장의 심사·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

- (1) 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 소속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재해조사 결과 사법처리(입건기준) 일로부터 2월 이내에 최초 확인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1항에 의한 확인주기에 의해 실시한다.

다만, 추후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였거나 위법사실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재해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을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29조)

※ 위법사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는 해당 현장으로부터 관련서류를 공문과 함께 접수하여 행정업무 처리

- (2) 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현장의 계획서 및 심사결과서, 확인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를 1부 복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전담자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확인을 받아 계획서 확인을 실시하되 자체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역본부/지도원은 해당 현장에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현장에서 관련서류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도록 행정업무 처리

※ 관련서류 검토 시 확인은 팀장 전결로 실시하고, 전담자가 팀장인 경우에도 검토자 뿐만 아니라 확인자도 팀장 전결로 서명

- (3) 심사 및 확인실시 결과는 **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의 **ERP**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한다.

다. <삭제 2010.12. >

라. **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의 심사·확인

- (1) 재해율이 양호하여 **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공동도급 현장에서 시공하는 경우와 심사대상 구조물을 시기적으로 차이를 두고 착공하는 경우에 있어 계획서 심사 및 확인에 대한 지침

○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 현장은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가 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계획서 심사 및 확인을 면제하고, 「공동이행방식」 현장은 주간사가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심사 및 확인 면제

○ 심사대상공사에 따라 자체 심사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대상공사의 실 착공일자가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 지정기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계획서 심사 및 확인 면제

- (2)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에서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정 유자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3)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가 자체심사 및 확인을 실시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공단에서 심사 및 확인 가능 여부

○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가 자체심사 및 확인에 소요되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에 따라 업무처리

- (4)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업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제출기한과 차이여부

-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에서 자체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관련서류 제출기한은 공사착공 전일까지임.
- (5)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중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 지정기간 이전에 착공한 현장의 경우 계획서 심사 및 확인실시 여부
 -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제출이 지연되어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 지정기간에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통상의 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에 따라야 하고, 계획서 제출기한을 경과한 사업장으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마. 청렴의무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 (1) 계획서 심사 및 확인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인에게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심사결과 통보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계획서 심사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청렴의무 이행 서약서에 민원인과 상호 서명하여 당해 공사 계획서 확인 종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3) 계획서 확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조의7 서식에 청렴문구를 삽입하여 민원인과 상호 서명하여 당해 공사 계획서 확인 종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청렴문구 예시(양식 하단 또는 날짜 하단 등에 직인 또는 인쇄 등으로 표기)

본인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업무 수행의 상대방으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공단 확인자 : _____ (서명) 사업장 입회자 : _____ (서명)

8. 시행일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의 다, 라” 개정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행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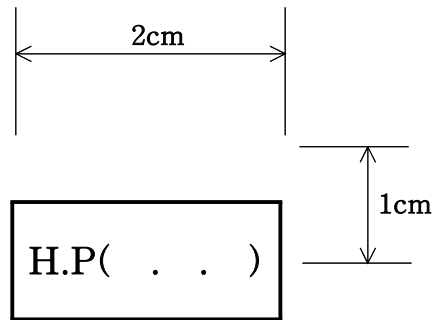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접수 시 CHECK LIST

구 분	주요 확인사항	비고
민원인 방문	☐ 제출서류 ○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2부 ○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관련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계산서 발급시 활용)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지연제출 확인) ☐ 민원인 기록사항 ○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 개요 - 담당자 및 현장소장 연락처, E-Mail 등	
접수직원 처리	☐ 계획서 내부 관련서류 검토 ○ 계획서 내부 제출서식(별지 제26호 서식) 작성 확인 - 공사 착공예정일(대상공사 착공 예정일) - 계획서 검토자 서명 및 경력 확인 ☞ 자격증 사본 등 -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확인 ○ 계획서 내부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 서식) 작성 확인 - 심사 대상별 도면 확인 ☐ 민원인 필요서류 발급(민원인 요구 시) ○ 접수증 ○ 심사수수료 계산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심사방법 기준

심사방법	기 준
서류심사	○ 제출된 계획서만으로 공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여 심사 진행에 이상이 없는 경우
회의심사	○ 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사업장 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회의가 필요한 경우 ○ 신공법, 신기술 적용으로 사업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 계획서가 지연 제출되어 고용노동관서에 지연 보고한 사업장
방문심사	○ 사업장에서 방문 심사 요청 시 ○ 현장의 주변 현황 등이 복잡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확인공중(작업)[Hold Point] 인장형태



() : 위험작업 진행 예정일시 명기 (적색)
예시 : (2007. 5. 2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별 주요 확인공종(작업)[Hold Point] 참조표

대상공사	위험작업 및 요인 예시	확인공종(작업)[Hold Point] 예시
1.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굴파기 작업에 의한 지하매설물 (가스관, 상수관, 전력관 등) 손괴	- 지하매설물 주변 굴파기 작업 ※ 지하철공사 등 토목공사에 한함
	○ 굴착 및 흙막이 지보공에 의한 붕괴	- 깊이 5미터 내외지점 굴착 작업 ※ 굴착 깊이 및 면적을 고려하여 Hold Point를 지정하되 지하 구조물 공사 시에는 확인주기에 따름
2.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포함)	○ 거푸집 동바리(층고 6미터 이상)에 의한 붕괴 - 로비,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등	- 해당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 다만, 동일한 동바리 구조로 높이 6미터 이상의 구조물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동바리 설치 시 확인을 실시한 후 다음 구조물은 1개월 이후 확인 실시
	○ 밀폐공간의 마감작업(도장 또는 방수작업 등)에 의한 질식 - 지하저수조, 정화조 등	- 해당 공간의 마감작업(에폭시 방수액 및 프라이머 도포, 유성도료 작업) 및 동절기 가열 양생작업
	○ 용접작업 등에 의한 화재·폭발 - 단열(우레탄폼 등) 및 배관 용접 작업	- 벽체 및 천정전면의 우레탄폼 등 단열재 주위에서 초기 용접 작업
	○ 구조물(RC)공사에 의한 추락	- 지상 4층 형틀작업 (연면적에 해당될 경우에는 4층 이하 가능) ※ 이후부터는 확인주기에 따름
	○ 철골구조물(SC, SRC)공사에 의한 추락	- 철골 1절(3개층) 철골 조립 작업 ※ 이후부터는 확인주기에 따름
	○ 빌딩 외부마감작업(석재, 커튼월 등)에 의한 추락	- 곤돌라 설치 사용 작업

대상공사	위험작업 및 요인 예시	확인공종(작업)[Hold Point] 예시
3. 터널공사	○ 갱입구 보강작업 중 붕괴	- 해당 작업
	○ 터널 굴착작업(NATM) 중 붕괴	- 터널 굴착 작업 초기(5미터 내외 지점) ※ 이후부터는 확인주기에 따름
4. 교량공사	○ 교각 코핑 작업 중 거푸집 낙하 및 추락	- 코핑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 시기를 달리하여 동일한 교량의 코핑 작업 시에는 코핑 거푸집 조립작업 초기에 확인을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확인주기에 따름
	○ 상부 슬래브 작업 중 추락, 붕괴, 낙하비래 - PSC Beam, Steel Box 등 거치 작업 - 거푸집 동바리(Full Staging) - 슬래브 거푸집 조립·해체작업 (작업대차 사용 작업)	- 동일한 교량에 대한 PSC Beam, Steel Box 등 거치 작업 및 거푸집 동바리, 슬래브 거푸집 조립·해체작업은 해당 작업 초기 ※ 이후부터는 확인주기에 따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회의

회 의 일 시					
회 사 명			현 장 명		
공 사 기 간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E-Mail	
참 석 자 현 황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공사진행상황					
특 기 사 항					

○○지역본부/지도원

심사위원

(인)

(인)

[별지 제2호 서식] 심사대상 이외 작업공종 기술지원 결과서

심사대상 이외 작업공종 기술지원 결과서

작업위 치	재 해위험요인	안전대 책

※ 상기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조건부 검토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조건부 검토서
(확인 시 제시된 사항)

200 . .

확인자 : (서명)

검토자 : (서명)

사업장명		공사금액	
심사대상 공사종류			
심사결과 내용 (조건부 사항)			
검토의견 및 검토결과(적정, 보완)			
보완제출 기한 : 월 일			

※ 검토의견은 확인 시 제시된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되, 검토결과 적정 시에는 향후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업무 인수·인계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과 관련하여 지정된 전담자 변경 및 당해 현장의 확인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인수·인계합니다.

인수·인계사항	
현 장 명	
확 인 일	
공사진행사항	
중점사항	

※ 전담자 변경 시에는 확인일을 기재하지 않음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인계자 : (인)

인수자 : (인)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서 200 . . . 확인자 : (서명) 검토자 : (서명)				
사업장명			공사금액	
심사대상 공사종류				
중대 재해	발생일	200 . . .	재해현황	사망 : 명
	조사일	200 . . .		부상 : 명
재해형태				
검 토 의 견				
※ 검토의견은 확인 시 참고사항 중심으로 작성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 전화,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직원 : ○○지역본부/지도원 건설안전팀 차장 000
(전화 : XXX-XXXX, 팩스 : XXX-XXXX)

업무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불편 · 부당한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 이의제기 안내요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 ▶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업무처리 지연, 설명요구 거절
- ▶ 이의제기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

☞ ○○ 지역본부/지도원장 000 (☎ XXX-XXXX) 또는
○○○○팀장 000 (☎ XXX-XXXX)
우편번호 : 000-000 소재지 : ○○시 00구 ○○동 ○○번지

☞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또는
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